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68

2003년 9월 2일
보 건 사 회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03년 6월 13일

다. 상정일자 : 제144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2003년 9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이봉화)

가. 개정이유

○ 여성발전센터를 전문직업교육기관으로 특화함으로써 여성 사회교육시설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확대 지원

○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여성발전센터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수강료 인상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범위를 모든 여성발전센터로 확대

나. 주요골자

가. 여성발전센터의 기능 중 기술교육사업을 직업교육사업으로 함
(안 제3조)

나. 여성발전센터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5조제2항・제3항)

○ 여성의 창업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노동부 등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직업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교육의 운영 근거규정을 둠

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그 직계가족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수급자을 이용우대자로 추가하고, 직업교육의 경우 취업이 가능한 자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문화탐방 등 특별 프로그램 운영의 직접경비 일부 및 개인적 필요에 의한 사물함 등의 시설・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교육생으로 하여금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5항・제6항)

마. 수강료 등 면제대상에 장애인과 그 직계가족, 실업급여 수급자를 추가하고,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의 교육과정 수강료를 20%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

바. 직업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급직업과정 수료자중 동일과목의 중급 또는 고급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당해과정의 출석률에 따라 기납부한 수강료의 20%범위안에서 이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제2항)

사. 모든 여성발전센터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 현 행 : 서부・동부여성발전센터

○ 개정안 : 서부・동부・중부・북부・남부여성발전센터

아. 여성발전센터의 이용자격 부여 및 사용료 등 면제・감면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사무에 추가함(안 제19조제2의2 및 제9호)

자. 교육 수강료를 인상하고 신규 기자재 사용료 등을 신설함
(안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동수)

○ 전문 직업교육 활성화 관련(동 개정조례안 제3조,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제5항, 제14조 제2항)

-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 참여 요구는 이제 시대적 요청으로 서울시의 정책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 기술교육을 직업교육으로 용어를 바꾸고, 중앙정부 또는 민간기관의 직업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취업가능성이 높은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우선권을 인정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여성의 취업 확대를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음

○ 시설 이용우대 관련(동 개정조례안 제6조)

- 이용우대 대상에 장애인과 그 직계가족,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를 추가한 것은 취업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계층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하나,
- 동 조례안 제6조 제1항의 단서조항은 전문 교육과정이나 중·고급 교육과정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불명확하고 단지 초빙강사에 따라 연동되는 수강료의 차이로 이를 나누는 점을 볼 때, 단서조항을 두어 전문 교육과정 등에 저소득 시민에 대한 이용우대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수요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단서조항은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 또한, 향후 조례에서 초급·중급·고급 직업 교육과정과 전문 교육과정에 대한 명확한 한계와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함

○ 사용료 등 부과징수 및 면제·감면 관련(동 개정조례안 제12조, 제13조)

- 사용료 등 개정내역을 보면, 수강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었고, 아동교실 사용료가 신설되었으며, 기자재 중 프로젝터, 피아노, 음향기기, 비디오 사용료가 신설되었음(사용료 등 개정내역 참조)
- 이와 관련하여 여성발전센터와 비슷한 직업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한남직업전문학교 등 4개 시립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비, 기숙사비, 식비 등을 모두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발전센터에서 수강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여성발전센터를 서울시에서 소유하는 한에서는 센터의 기능에 저소득 여성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반확충 사업을 배제할 수 없으며, 동 조례안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과 그 직계가족, 실업급여 수급자를 이용우대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정책의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민간위탁을 고려하여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볼 수 없음

※ 사용료 등 개정 내역

구분			단위	사용료 등 (단위 : 원)	
개 정 전		개 정 후		개 정 전	개 정 후
수 강 료	일반기술 교육	일 반 과 정	1인 1월	10,000	12,000~ 24,000
	전문기술 교육	전문, 중·고급 과 정	1인 1월	20,000~ 50,000	100,000원 이내
	생 활 문 화	좌 동	1인 1월	10,000	12,000~ 24,000
	수 영	좌 동	1인 1월	40,000	40,000
	<신설>	특별 프로그램	1인 1월	-	실 비
<신설>		아 동 교 실 (방과후 교실 등)	1인 1기	-	10,000
보 육 실 이 용 료		보육실 사용료	1인 1월	7,500	7,500
수 영 장 자 유 이 용 료		좌 동	1인 1회	2.500	2,500
주 차 장 사 용 료		좌 동	1대 1월	30,000	30,000
			1대 1시간	1,000	1,000
시 설 사 용 료	강 당	좌 동	1회 1시간	10,000	10,000
	교육실 및 회의실	좌 동	1회 2시간	5,000	5,000
기 자 재 사 용 료	컴 퓨 터 기 기	좌 동	1인 2시간	1,000	1,000
	재 봉 기	좌 동	1인 2시간	1,000	1,000
	제 빵 기 기	좌 동	1팀 2시간	10,000	10,000
	<신설>	프 로 젝 터	1회 3시간	-	10,000
	<신설>	피 아 노	1회 3시간	-	10,000
	<신설>	음 향 기 기	1회 3시간	-	10,000
	<신설>	비 디 오	1회 3시간	-	10,000
창업보육 지원시설 사 용 료	창 업 보 육 실	좌 동	㎡당/월	1,000	1,000
	창 업 부 스	좌 동	부스당/월	10,000	10,000

- 감면에 관한 사항은 동 조례 제6조의 이용우대 조항과 관련하여 장애인 및 그 직계가족과 실업급여 수급자를 면제대상에 추가하고 이용율이 낮은 시간대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20% 감면규정을 신설한 것은 시설 운영상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함

○ 사용료 등의 반환 및 민간위탁, 사무위임 등과 관련(동 개정조례안 제14조, 제15조, 제19조)

-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수강료 반환 규정을 수정하고, 초급 교육과정 수료생에 대한 중·고급과정 수강에 있어 일부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볼 수 있음
- 동 조례안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여성발전센터를 서부·동부 등 2개 센터에서 5개 센터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모든 여성발전센터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관리업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성발전센터의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
- 동부여성발전센터와 서부여성발전센터의 민간위탁을 전후한 행정효과에 대한 타당성 있는 분석자료가 없어 민간위탁의 성패(成敗)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섣불리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자칫 시행착오를 누적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남부·북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는 별정직 교사를 비롯한 여성발전센터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된 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함
- 사무의 위임 관련 개정내용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센터 소장에게 시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미구성

7. 심사결과 : 수정 가결(참석위원 전원일치)

가. 수정이유

○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 인상(안)중 직업일반과정, 생활문화교실 수강료를 현행 10,000원에서 교육시간수에 따라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12,000원에서 24,000원까지 최저 20%에서 최고 140%까지 인상됨에 따라 여성발전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여성들에게 가계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큼

○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에 저소득 여성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반확충 관련 사항을 배제할 수는 없음

나. 주요골자

○ 별표2 직업교육 중 일반과정과 생활문화교실의 수강료를 12,000 ~ 24,000원에서 15,000원 조정

○ 별표2 컴퓨터기기, 재봉기, 제빵기기, 프로젝터, 피아노, 음향기기, 비디오에 대한 사용료는 시에서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직업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여성복지서비스 기능을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삭제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붙임 :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268

발의년월일 : 2003년 9월 2일
발 의 자 : 이정선의원 외 1인

1. 수정이유

○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 인상(안)중 직업일반과정, 생활문화교실 수강료를 현행 10,000원에서 교육시간수에 따라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12,000원에서 24,000원까지 최저 20%에서 최고 140%까지 인상됨에 따라 여성발전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여성들에게 가계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큼

○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에 저소득 여성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반확충 관련 사항을 배제할 수는 없음

2. 주요골자

○ 별표2 직업교육 중 일반과정과 생활문화교실의 수강료를 12,000 ~ 24,000원에서 15,000원 조정

○ 별표2 컴퓨터기기, 재봉기, 제빵기기, 프로젝터, 피아노, 음향기기, 비디오에 대한 사용료는 시에서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직업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여성복지서비스 기능을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수정안 조문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2 중 직업교육의 일반과정란을 다음과 같이하고,

구 분	단 위	사용료 등	부 과 기 준
일반과정	1인 1월	15,000원	◦주당 15시간 이내

생활문화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구 분	단 위	사용료 등	부 과 기 준
생활문화 수 강 료	1인 1월	15,000원	◦1일 3시간 이내, 주 1일 기준

시설사용료의 부과기준란을 삭제하고, 기자재 사용료란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 등(제12조관련)				<별표>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 등(제12조관련)				<별표>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 등(제12조관련)			
구 분		단 위	사용료 등	부 과 기 준	구 분		단 위	사용료 등	부 과 기 준	구 분		단 위	사용료 등	부 과 기 준
일반기술교육 수강료		1인 1월	10,000원	◦주 15시간 이내	직업교육	일반 과정	1인 1월	12,000원 ~ 24,000원	◦주당4시간 이하 : 12,000원 ◦주당 5~6시간 : 18,000원 ◦주당7시간 이상 : 24,000원	직업교육	일반 과정	<개정안과 같음)	15,000원	◦주당 15시간 이내
전문(고급 과정) 기술 교육 수강료		1인 1월	20,000원 ~ 50,000원	◦강사료와 수강료 연동 (최고 주 1일 10,000원)		전문, 중·고급 과정	1인 1월	100,000원 이내	◦강사료와수강료 연동 (시장이 교육수요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당해과정의 총수강료 수입이 당해 과정의 강사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00,000원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음)		전문, 중·고급 과정	<개정안과 같음)	100,000원 이내	<개정안과 같음)
생활문화 수강료		1인 1월	10,000원	◦1일 3시간 이내, ◦주 1일 기준	생활문화수강료		1인 1월	12,000원 ~ 24,000원	◦주당2시간이하 : 12,000원 ◦주당 3시간 : 18,000원 ◦주당 4시간이상 : 24,000원	생활문화수강료		<개정안과 같음)	15,000원	◦1일 3시간이내, 주 1일기준
시 설 사용료	강 당	1회 1시간	10,000원	◦교육기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자재 사용시 기자재 사용료 별도	시 설 사용료	강 당	1회 1시간	10,000원	◦교육기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자재 사용시 기자재 사용료 별도	시 설 사용료	강 당	1회 1시간	10,000원	<삭 제>
	교육실 및 회의실	1회 2시간	5,000원			교육실및 회의실	1회 2시간	5,000원			교육실및 회의실	1회 2시간	5,000원	
기자재 사용료	컴퓨터 기기	1인 2시간	1,000원	◦교육생에 한함 ◦센터 운영시간에 한함 ◦1팀은 4인이내	기자재 사용료	컴퓨터 기기	1회 2시간	1,000원	◦센터운영시간에 한함	<삭 제>				
	재봉기	1인 2시간	1,000원			재봉기	1회 2시간	1,000원						
	제빵 기기	1팀 2시간	10,000원			제빵 기기	1팀 2시간	10,000원						
						프로 젝터	1회 3시간	10,000원						
						피아노	1회 3시간	10,000원						
						음향 기기	1회 3시간	10,000원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를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 및 창업부스”로 한다.

제3조 본문중 “여성의 복지증진”을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으로 하고, 동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사업 : 여성의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생활문화교육 및 문화탐방 등 특별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개설·운영

제5조의 본문중 “각호의 1”을 “각호”로 하고, 동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창업센터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및 여성발전센터의 직업교육 수료생

②시장은 여성의 취업 및 창업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 등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교육을 위탁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생에 대한 수강료는 위탁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남성 또는 타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일정범위 안에서 교육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중 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타 신청자에 우선하여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문 및 중·고급직업교육과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 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그 직계가족
6.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
7.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각호의 자가 직업교육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습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조제1호의 직업교육사업의 경우 시장은 취업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를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직업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업교육생 자녀가 다른 이용자보다 보육실을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제1항중 “전문(고급과정) 기술교육과정”을 “전문 및 중·고급 직업교육과정”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교육수강료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교육기간의 종료전까지 이를 후납하게 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시장은 제3조 제1호의 교육사업중 특별프로그램의 경우 교육과정 개설에 따른 직접경비의 일부를 교육생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프로그램 수강을 위하여 교육생이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사물함 등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는 교육생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4의2호 및 제4의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업교육수강료, 보육실 이용료, 강당·교육실·회의실의 시설이용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보육실 이용료의 면제는 직업교육생의 아동에 한한다.

4의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그 직계가족

4의3.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

제13조 제2항중 “기술교육수강료”를 “직업교육수강료”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3조제1호의 직업교육사업으로서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운영되는 일반과정에 대하여는 당해 과정의 수강료를 20% 감면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강일부터 7일 이내 또는 시설이용일 전일까지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 전액반환
2. 개강일부터 7일 경과후 또는 시설이용개시일 경과이후에 이용하지 아니 할 것을 신고한 경우 :신고월을 제외한 잔여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반환. 다만, 별표2의 사용료 등중 시설사용료는 신고일 이후의 잔여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단위로 계산하여 반환

②직업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급직업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동일과목의 중급 또는 고급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과정의 출석률에 따라 기납부한 수강료의 20%범위안에서 이를 반환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제1항중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부·동부·중부·북부·남부여성발전센터의 관리·운영

3. 제1호 이외의 여성발전센터의 전문 및 중·고급 직업교육과정 운영

제19조 제2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호중 "기술교육생"을 "직업교육생"으로 하며, 동조제9호 및 제9의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발전센터의 이용자격 부여

9.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후납 및 분할납부 결정, 사용료 등 면제·감면, 징수한 사용료 등의 반환

9의3.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발전센터의 직업교육과정 운영 위탁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용허가 등을 받아 사용중이거나 교육을 수강중인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용허가 등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 등(제12조 관련)

구 분		단 위	사용료 등	부 과 기 준
직업교육	일반과정	1인 1월	15,000원	○ 주당 15시간 이내
	전문, 중·고급과정	1인 1월	100,000원 이내	○ **강사료와 수강료 연동** (시장이 교육수요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당해과정의 총 수강료 수입이 당해 과정의 강사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00,000원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음)
생활문화		1인 1월	15,000원	○ 1일 3시간 이내, 주 1일 기준
특별 프로그램		1인 1월	실 비	○ 강좌개설에 따른 직접경비를 참여 예상인원 기준으로 산출, 적용
아동 교실 (방과후 교실 등)		1인 1기	10,000원	○ 1기당 정액 부과
보육실 사용료		1인 1월	7,500원	○ 교육수강시간에 한함
수영장 사용료	수강료	1인 1월	40,000원	○ 월 20시간 이내
	자유이용료	1인 1회	2,500원	
주차장 사용료		1대 1월	30,000원	○ 주차장을 외부에 위탁운영하는 경우,별도약정에서 정한 사용료 징수
		1대 1시간	1,000원	
시 설 사용료	강당	1회 1시간	10,000원	
	교육실 및 회의실	1회 2시간	5,000원	
창업보육 지원시설 사용료	창업보육실	㎡당/월		○ 보증금 1,000,000원 별도 ○ 관리비 별도
	창업부스	부스당/월		○ 보증금 500,000원 별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①~③ 생략 ④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여성발전센터에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조(설치) ①~③ (현행과 같음) ④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여성발전센터에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센터"라 한다) 및 창업부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센터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사업 : 여성의 경제력 향상·능력개발 및 문화생활에 필요한 기술교육·생활문화교육 및 교양강좌 등의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2 ~6(생략)	제3조(기능)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센터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사업 : 여성의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생활문화교육 및 문화탐방 등 특별프로그램 등의 교육과정 개설·운영** 2~6(현행과 같음)
제5조(이용자의 자격)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 2(생략) **3.창업센터: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및 여성발전센터 기술교육 수료생** **가. 기술교육생** **나. 일시보호필요여성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기술교육생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잔여시설이 있는 경우에 한함)** 4.(생략)	제5조(이용자의 자격) ①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2(현행과 같음) **3.창업센터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및 여성발전센터의 직업교육 수료생** 4.(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②시장은 여성의 취업 및 창업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 등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교육을 위탁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생에 대한 수강료는 위탁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신 설 >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남성 또는 타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일정범위안에서 교육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이용우대 등)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용신청자에 대하여는 타 신청자에 우선하여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이용우대 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타 신청자에 우선하여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문 및 중·고급 직업교육과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 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그 직계가족 6.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 7.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현 행	개 정 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습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각호의 자가 직업교육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습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다만, 제1항제6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5조제1호의 교육사업으로서 이용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할 때에는 정원의 일정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삭 제 >
④교육사업의 프로그램 성격이 가족단위 또는남성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족 또는 남성에게 이용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삭 제 >
⑤제5조제1호의 교육사업 중 기술교육사업의 경우 시장이 판단하여 취업가능한 여성을 교육정원의 20%범위안에서 우선선발할 수 있다.	⑤제3조 제1호의 직업교육사업의 경우 시장은 취업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를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육실의 이용) ① (생략)	제9조(보육실의 이용) ①(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기술교육생 교육의 원활을 위하여 기술교육생 자녀가 우선하여 보육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직업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업교육생 자녀가 다른 이용자보다 보육실을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③(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 등 부과·징수) ①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교육프로그램의 고급화와 우수강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고급과정) 기술교육과정**에 한하여 강사료와 수강료를 연동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 부과·징수) ①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교육프로그램의 고급화와 우수강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및 중·고급 직업교육과정**에 한하여 강사료와 수강료를 연동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은 선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후납하게 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은 선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삭제)
③시장은 여성발전센터 이용자의 가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 등의 종료되지 아니하는 기한내에서 후납하게 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교육수강료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교육기간의 종료전까지 이를 후납하게 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생 략)	④(현행과 같음)
<신 설>	⑤시장은 제3조제1호의 교육사업중 특별프로그램의 경우 교육과정 개설에 따른 직접경비의 일부를 교육생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⑥프로그램 수강을 위하여 교육생이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사물함 등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는 교육생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등 면제·감면)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교육수강료, 자녀의 보육실 이용료, 강당·교육실·회의실의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자녀의 보육실 이용료의 면제는 기술교육수강자에 한한다.	제13조(사용료 등 면제·감면)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교육 수강료, 보육실 이용료, 강당·교육실·회의실의 시설이용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보육실 이용료의 면제는 직업교육생의 아동에 한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그 직계 가족
<신 설>	4의3.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

현 행	개 정 안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기술교육수강료**와 그 자녀의 보육실 이용료를 50%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직업교육수강료**와 그 자녀의 보육실 이용료를 50%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	**③제3조제1호의 직업교육사업으로서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운영되는 일반과정에 대하여는 당해과정의 수강료를 20% 감면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개강일 또는 시설이용일 전일까지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 전액반환	**1. 개강일부터 7일 이내 또는 시설이용일 전일까지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 전액반환**
2. 개강일 또는 시설이용 개시일 이후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한 경우 :신고월을 제외한 잔여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반환, 다만, 별표2의 사용료 등중 시설사용료는 신고일을 제외한 잔여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반환	**2. 개강일부터 7일 경과 후 또는 시설이용개시일 경과 이후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한 경우 : 신고월을 제외한 잔여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반환. 다만, 별표2의 사용료 등중 시설사용료는 신고일 이후의 잔여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단위로 계산하여 반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	**②직업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급직업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동일과목의 중급 또는 고급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과정의 출석률에 따라 기납부한 수강료의 20%범위안에서 이를 반환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운영의 위탁) ①(생략) **1. 서부·동부여성발전센터의 관리·운영** 2. (생략) **3. 제1호 이외의 여성발전센터의 기술교육과정 운영** ② (생략)	제15조(운영의 위탁) ①(현행과 같음) **1. 서부·동부·중부·북부·남부여성발전센터의 관리·운영**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이외의 여성발전센터의 전문 및 중·고급 직업교육과정 운영**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사무의 위임 등)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은 이를 여성발전센터의 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1. ~ 2. (생략) < 신 설 > 3. ~ 5. (생략) 6.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실 운영기간, 운영시간의 연장 또는 축소, **기술교육생** 자녀에 대한 보육실 이용우선권 부여, 보육실 이용아동에 대한 주식 또는 간식의 제공 7. ~ 8. (생략) **9.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후납 및 분할납부 결정, 징수한 사용료 등의 반환** 9의2. (생략) **9의3.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발전센터의 기술교육과정 운영위탁** 10. (생략)	제19조(사무의 위임 등)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은 이를 여성발전센터의 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발전센터의 이용자격 부여** 3. ~ 5. (현행과 같음) 6.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실 운영기간, 운영시간의 연장 또는 축소, **직업교육생** 자녀에 대한 보육실 이용우선권 부여, 보육실 이용아동에 대한 주식 또는 간식의 제공 7. ~ 8. (현행과 같음) **9.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후납 및 분할 납부 결정, 사용료 등 면제·감면, 징수한 사용료 등의 반환**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발전센터의 직업교육과정 운영위탁** 10. (현행과 같음)